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등의 국산 생화 사용 의무〉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54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 등의 국산 생화 사용 의무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3.
3. 회 부 일 : 2026.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념식·행사, 청사 내외부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의 화훼 활용은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사업·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 등의 국산 생화 사용 의무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주관 기념식·행사 및 청사 내 환경·미관 조성 사업 등에 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산 생화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생화 사용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산 생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내외의 환경 및 미관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국가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조형물 또는 기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게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화훼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국가 등의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의무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2026. 3. 11. 확인

그런데, 최근 조화 및 외국산 화훼 수입 증가와 그 이용 확대 우려 등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화훼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¹⁾

【 최근 10년간 조화·외국산 화훼 수입액 및 수입량 현황 】

1. 조화

(단위: 천USD,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액	24,424	24,848	28,154	34,173	35,299	28,154	43,002	45,588	38,541	37,510
수입량	3,779	4,412	4,489	5,039	5,272	4,739	5,740	5,832	5,215	5,011

2. 외국산 화훼

(단위: 천USD,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액	60,769	62,971	65,361	80,799	86,515	81,716	105,252	125,048	119,169	121,537
수입량	13,481	14,626	13,982	19,448	22,091	21,226	21,678	23,075	22,278	22,365

※ 주: 조화는 HS 코드 670210(플라스틱 재질), 670290(그 밖의 재질)이 해당

※ 자료: ① 조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26. 3. 17. 확인

② 외국산 화훼: 농림축산식품부, “2024 화훼재배현황”, 2025. 12.

1) 참고로, 조화 및 외국산 화훼 수입 증가 외에도, 화훼산업은 2020년대 초반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개최 감소에 따른 피해를 겪기도 하였음(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663호, 2020.)

이에 개정안은 국가등이 ① 기념식 및 행사, ② 청사 또는 건물의 환경 및 미관 조성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조형물 또는 기념시설 설치 등에 화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국산 생화²⁾로 사용³⁾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산 생화의 수요 창출을 통하여 국내 화훼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에서 국가등에게 국산 생화의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조치로서, 특히 외국과의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생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WTO의 내국민 대우 규범 위반 소지가 있어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개정안은 국가등에게 특정 목적의 화훼 이용 시 국산 생화 사용을 강제하여 그 의무의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노력의무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한편,

노력의무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법 제3조의 책무 규정에 제3항으로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현행법은 화훼를 “식물”로 규정하여 조화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이에 따라 조화와 구별하여 별도로 생화를 규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화가 아닌 “화훼”로 수정할 필요

3) 개정안은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재사용 화환” 외에는 화훼의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으로 수정할 필요

문 의 처
02)6788-5416